

「충간소음 세미나」 개최 계획(안)

< 개최 배경 >

- 주택법상 충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회원사에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

□ 세미나 개요

- 일시·장소 : 7.11(목) 14:00,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(서초역)
- 참석대상
 - (국토부) 주택건설공급과 고성우 서기관, 김현성 주무관
 - (협회) 산업본부장, 최연식 과장, 회원사 임직원*
 - * 시공기술팀, 설계팀, CS팀, 법무팀 등 충간소음 관련 임직원
 - (유관기관) LH, 국토안전관리원, 건협, 대주협
 - (법무법인 린) 최승관 변호사 등
- 진행순서(안)

시 간	내 용	비 고
13:30~	참석자 등록·접수	
14:00 ~ 14:10	개회(인사말씀)	협회, 린
14:10 ~ 15:10	1. 법리검토 내용 * 주택법,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의 보완점 및 대안 등	린
15:10 ~ 15:20	휴 식	
15:20 ~ 16:20	2. 충간소음에 대한 건설사의 인식 및 저감노력 * 정부대책·보완시공 방안·손해배상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의견, 기술적 한계, 충간소음 저감 사례 또는 대안 제시 등	롯데건설 안장호 수석*
16:20 ~ 17:00	3. 각 관계자* 질의응답, 협조요청 등 * 국토부, LH, 국토안전원, 린, 협회, 회원사	자유발언

* 강의료 30만원 지급 예정(롯데) ☞ 예산항목 : 진흥사업비 - 회의비

※ (국토부 요청) 보도자료 배포·언론사 참석은 지양(협회·회원사, 기관만 참석)

강의 내용(안)

1강 법리검토 내용	2강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사의 인식 및 저감노력
<p>1.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미달하면 하자로 볼 수 있는지?</p> <p>2. 손해배상을 행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지?</p> <p>3.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강화 적용하여, 인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성능 기준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?</p> <p>4.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입주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포함에 대한 의견</p> <p>5.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이 완전한 배상으로서 적절한지?</p> <p>6. 50%는 분양 계약자에게 지급, 50%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성격으로 별도 준비금을 만들어, 향후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관련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</p> <p>7. 시사점 및 대안 제시</p>	<p>1.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회구성원과 이해관계</p> <p>2. 기술자가 겪는 어려움 (1) 기초 연구 미비 (2) 사회적 오해 (3) 기술의 한계 (4) 소결</p> <p>3. 층간소음 담당자가 겪는 어려움 (1) 규제의 모호함(바닥구조 시공확인서) (2) 성능평가 방법의 불합리성 (3) 사후성능검사 방법의 불합리성 (4) 성능보강공사 이행능력 (5) 과도한 손해배상금 책정 (6) 설계 및 시공의 어려움 (7) 소결</p> <p>4. 노력과 한계 (1) 시공가능한 인정구조 개발 (2) 설계 기술 개발 (3) 시공품질</p> <p>5. 건의사항</p>